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5가합572507 판결 [채권매매대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나200097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5가합572507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노석준, 정혁준

피 고 1. 주식회사 B

2. 한국무역보험공사

3. 주식회사 C

4. 한국수출입은행

5.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명칭 기술신용보증기금)

6. 주식회사 D

7. 중소기업은행

8. 주식회사 E

9. F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동아, 허보열

변론 종결 2018. 11. 8.

판결 선고 2018. 12. 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8.12. 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2.부터 이 사건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선박건조, 수리, 개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들은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2010. 12. 3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정한 G의 채권금융기관들이다.

나. 신규수주의 감소, 선박건조비용의 상승 등으로 G의 재무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0. 7. 16. G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이하 '이사건 자율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G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였다. 이 사건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자율협약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채권금융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G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채권금융기관운영협약 제2조를 준용하고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채권금융기관'이란 G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제공한 은행으로서 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및 그 승계인을 말한다.

2 '주관은행'이란 C을 말한다.

3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 파생상품 등 G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을 말한다.

제3조(구성) G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붙임1]과 같이 협의회를 구성한다.

제5조(업무 및 기능)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협약의 제·개정과 G의 경영정상화 추진 관련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의결방법)

1 협의회 의결은 총 신용공여의 3/4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의결방법은 협의회를 소집하여 직접 의결하거나, 서면결의에 의한다.

제8조(준용)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 운용방법 및 절차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협약',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2010. 7. 16.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협약은 G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기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 이 사건 협의회는 2010. 11. 8. 제5차 협의회에서 2010. 7. 15.을 기준으로 신고된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고, G에 대한 유예된 모든 채권의 상환기한을 2012.12. 31.까지 유예하고, G에 운영자금 200억 원을 신규 지원하는 내용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위 신규자금지원 등의 의결에 반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11.15.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위 제5차 협의회 부의 안건이 전부 가결되었음을 통보받고, 2010. 11. 22. 위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의 채권액(무담보 채권) 5,000,000,000원에 대하여 구 기촉법 제24조 제1항1) 등에 따라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 사건 협의회에서 탈퇴하였다.

라. 한편, G은 2011. 6. 30. 창원지방법원 2011회합2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그리하여 이 사건 자율협약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자율협약이 종료되었다), 2012. 1. 30.회생절차가 폐지된 다음 2012. 2. 15. 같은 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11. 22. G에 대한 50억 원의 무담보 채권에 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채권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채권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매매대금은 H회계법인이 2010. 10.29.자로 작성한 'G 경영정상화방안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무담보채권 회수율 19.2%를 적용한 960,000,000원이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채권매매대금9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채권매매계약이 체결된 2010. 11.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2010. 11. 22.자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채권매매대금 산정은 원고 주장의 위 회계법인 검토보고서상의 무담보채권 회수율을 적용해서는 아니 되고, 1 회계법인이 원고의 탈퇴와 관련된 5차 협의회 안건 결의시점인 2010. 11. 8.을 기준으로 G의 청산가치를 산정하고서 그에 따른 원고 채권의 청산배당률로 산정된 6.97%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매 대상 채권을 양도할 의무와 피고들의 채권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G에 대한 50억 원의 무담보 채권을 양도받기 전까지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채권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채권매매계약의 성립

원고가 2010. 11. 8. 제5차 협의회는 신규자금지원 의결에 반대하고 2010. 11. 22.위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인 피고들을 상대로 구 기촉법 제24조 제1항 등에 따라무담보 채권 5,000,000,000원에 대한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기촉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채권매수청구권은 반대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형성권이라 할 것인바,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원고와 위 의결에 찬성한 피고들 사이에 채권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채권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권매매대금의 결정

1) 살피건대, 구 기촉법 제24조 제2항은 '협의회는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의 매입가격 및 조건을 반대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에 찬성한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에 매수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채권의 매입 · 상환의 가격 및 조건은 협의회와 반대채권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정하며,

제5항은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채권의 매입·상환의 가격 및조건을 결정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협의회와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당해 부실징후기업의 가치 및 약정의 이행가능성을 평가하여 산정한 가격과 매입기관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0. 11.22.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이 사건 협의회와 원고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부실징후기업의 가치와 재산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인정한 적절한 가액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매매대금 결정의 기준시점은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2010. 11. 22.이라고 볼것이다.

2) 다음으로 원고가 매수청구한 채권의 적절한 매매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주장의 위 H회계법인 보고서는 이 사건 협의회가 G의 경영정상화방안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H회계법인도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작업 추진여부 검토만을 위한 의사결정 참고자료로 사용되어야 하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가격산정에 청산가치 회수율 적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이 사건 협의회에서 위 보고서상의 무담보채권 회수율 19.2%를 근거로 채권매매대금을 산정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위 H회계법인의 보고서에 기재된 무담보채권 회수율 19.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관련사건(이 법원 2015가합548139)에서 G의 청산가치 및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인으로 지정된 J는 2017. 9. 12.자 감정보고서에서 '감정범위 제한 등의 사유로 무담보채권의 회수율에 대한 신뢰성 있는 감정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워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들이 그 적용을 주장하는 I 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우발채무가 존재하고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이미 G에 대한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어 객관적인 관련 자료 등이 남아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비록 2013. 7. 23.자 I 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일부 우발채무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들 주장의 위 I 회계법인의 보고서는 원고 채권의

적정 매수가격을 검토한 보고서로서, G의 2010. 12. 31.자 청산가치를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2010. 11. 22.)에 근접한 제5차 협의회 일자인 2010. 11. 8.을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그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I회계법인의 보고서에 기재된 후순위채권 배당률 6.97%를 무담보채권의 회수율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채권매매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I 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원고 채권의 매매대금을

계산하면 348,500,000원(= 채권 원금 5,000,000,000원 × 무담보채권 회수율 6.97%)이 된다.

3) 나아가, 구 기촉법 제24조 제2항 후문2)은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에 반대채권을 매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매매대금의 이행기는 G의 경영정상화 이행기간이 종료된 때라 볼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자율협약이 종료된 2011. 6. 30.에 경영정상화 이행기간도 종료되어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그 다음날인 2011. 7. 1.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인 2010. 11. 22.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한편, 이 사건 매매대상채권은 무담보의 지명채권으로, 지명채권 양도의 경우 채권양도계약 체결과 동시에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할것인바, 원고의 2010. 11. 22.자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채권매매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고들에게 이전된다고 할것이므로(구 기촉법 제24조 제4항은 '채권의 매입 · 상환의 가격 및 조건은 협의회와 반대채권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채권의 매입 · 상환의 가격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가격과 잠정가격과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고로부터 G에 대한 50억 원의 무담보채권을 양도받기 전까지는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현, 판사 조용희, 판사 구준모

1) 제24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은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참석하여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하며, 그 기간 이내에 채권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 제12조에 따른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2) 제24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2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의 매입가격 및 조건을 반대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에 찬성한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에 매수하도록 한다.